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본인부담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이용정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자로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 온라인을 통한 기관홍보 및 급여종류홍보

-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종사자마당 등을 이용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한다.
- ②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 ③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경로잔치 등과 경로당 방문을 통해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 ④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 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 ⑤현수막 또는 기념타올로 기관을 홍보한다

제9조(모집방법의 원칙) ①이용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대상자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 시 보호자 등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1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3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성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①.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②.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③.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④.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계약기간 중 이용료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료의 변경 시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②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관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 ④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 ⑤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 ⑥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서비스의 내용) 관은 급여별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인지활동지원	- 인지활동프로그램 진행 - 잔존기능유지를 위한 일상생활함께하기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차량내목욕은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요양보호사 2인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신입욕방법으로 제공하며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잘 관찰한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옷갈아입히기,목욕전,후 안전한 귀가와 사용물품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제18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시간별 서비스 단가를 적용한 본인부담금을 납입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이용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본인부담경감대상 : 감경 40%, 감경60% 기초생활수급자 : 0%				
그 밖의 부담액	본인이 100%부담				

구분	평일(원)
30분이상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구분	평일(원)
40분이상 60분미만	67,740원
60분이상	84,670원

- ①기관은 이용자에게 매월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지정 일에 전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본인부담금 납부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자동이체또는 기관의 지정한 계좌에 송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9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20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②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발생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③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1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한다.

②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④기관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대상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